

인천지방법원 2024. 5. 10 선고 2024가단207304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후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5. 1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2. 8. 16. 접수 제27896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1항(무변론 판결)

판사 정지원

별지